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월 9일, 권영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4.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3.)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9.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대체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권영진)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 보상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가. 주택지구지정 전 토지등 협의 매수 허용(안 제26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로 본다.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공공주택사업자)¹⁾가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지구지정 이전에 토지등²⁾의 협의 매수³⁾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⁴⁾는 협의 매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보증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1. ~ 4. (생략)
- ③ ~ ⑥ (생략)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3) **협의 매수** :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인 협의에 따라 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강제수용이 아닌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보상 방식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

지 않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인정’ 전이라도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⁵⁾하고 있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지정(사업인정)⁶⁾ 이전에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의 지위에 불과하고 주택지구지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사업시행자’로서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⁷⁾⁸⁾되므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경우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생략)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⑥ (생략)

7) 「공공주택 특별법」

제1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8) 「공공주택 특별법」 상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는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택지구지정 제안 이후 관계기관 협의(법 제8조), 주민 등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주택지구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함.

[표 1] 일반 공익사업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협의매수 가능시점

구 분	일반 공익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공익사업 수행 시(사업인정 이전)	공공주택지구지정 이후 (이전에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 지위)
협의 매수 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6항)
협의 매수 가능 시점	사업인정 이전에도 가능	사업인정(공공주택지구지정) 이후 가능

※자료: 현행법 조문내용 요약 정리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지구지정 단계 이전에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이후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최근 토지보상 절차 지연이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⁹⁾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지

청취(법 제10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제6조)가 진행된 이후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면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국토교통부 설명)

9) 「서울 서초 등 GB 해제해 5만가구 공급...“토지 보상 등 속도전 필요」(뉴스1, 2024. 11. 6.)

-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4곳 택지 발표

- 2029년 첫 분양·2031년 첫 입주 목표

「해제 그린벨트’ 66%, 입주까지 8년 이상...토지보상부터 지연」(조선일보, 2024. 11. 11.)

- 정부 “아파트 5만호 7년 내 공급”...계획대로 실현될까

정 이전에 토지보상 절차를 조기 착수하게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 과정에서 토지등 보상기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최근 6년간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부터 ‘공공주택지구지정’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약 1년 5개월로 나타나는바,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주택지구지정 이전에 협의 매수를 허용할 경우 토지보상 절차가 상당 기간 조기화된 시점부터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최근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의 후보지발표부터 지구지정까지 소요 기간

지구명	후보지 발표 (=주민 의견청취 공고)	지구지정	소요기간
고양창릉	‘19.05	‘20.03	10개월
남양주왕숙	‘18.12	‘19.10	10개월
부천대장	‘19.05	‘20.05	12개월
인천계양	‘18.12	‘19.10	10개월
하남교산	‘18.12	‘19.10	10개월
광명시흥	‘21.02	‘22.11	21개월
의왕군포안산	‘21.04	‘23.06	26개월
화성진안	‘21.08	‘24.02	30개월
김포한강2	‘22.11	‘24.07	20개월
평택지제	‘23.06	‘24.12	18개월
진주문산	‘23.06	‘24.12	18개월
평 균			16.82개월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로,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토지 출입, 임시도로 등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등의 권한¹⁰⁾을 주택지구지정 제안자에게도 부여¹¹⁾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또한 신속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주택지구지정 제안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므로 공공주택지구조성 과정에서 사업 취소 우려가 매우 낮으며, 토지등 소유자의 행위 제한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한 후보지 발표 시점(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부터 발생¹²⁾하여 주택지구지정을 전후로 보상 관련 권리관계가 변동될 가능성 또한 낮으므로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한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임.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장해물 제거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제안 또는 지구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와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생략)

12)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 ⑥ (생략)

한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취소 가능성이 낮다는 국토교통부 의견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지구지정 해제는 아니더라도 최근 ‘서울 태릉지구’¹³⁾와 같이 개발방식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이나 주민 반대로 인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주택지구지정 이전에 토지등을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현실적인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주택사업자에 의해 남용될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협의 매수 주체를 명확화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13) ‘서울 태릉지구’는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여 총 1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지구로 2020년 8월 4일 발표되었지만, ①주민반대 및 지역 갈등, ②문화재 보존 문제, ③군사시설 및 보안 문제, ④교통 인프라 확충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상태임.

7. 수정안의 요지

협의 매수 주체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로 명확히 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정 의견을 제시함.

(준용 규정 내용 명확화 필요)

-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 열람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세 가지를 포함하여 조 제목을 “보상계획의 열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보상계획의 “공고”만을 규정하고 있어 통지 및 열람은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

따라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 전달 방식에 공고, 통지 및 열람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고 있는 제15조의 조 제목을 인용하여 “보상계획의 열람 등” 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25.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협약 매수의 경우 공공지구지정 제안 이후 추진하는 행위로서, 협약 매수 주체를 명확화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협약 매수 주체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로 명확히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6조제3항 후단 중 “지정을 제안하는 자”를 “지정을 제안한 자”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u>토지소유자 및 관</u>	-----
	<u>계인과의 협의, 계</u>	-----
	<u>약의 체결에 관한</u>	-----
	<u>사항은 「공익사업</u>	-----
	<u>을 위한 토지 등의</u>	-----
	<u>취득 및 보상에 관</u>	-----
	<u>한 법률」 제14조</u>	-----
	<u>부터 제17조까지를</u>	-----
	<u>준용하고, 이 경우</u>	-----
	<u>“사업시행자”는 “주</u>	-----
	<u>택지구의 지정을</u>	-----지정을
	<u>제안하는 자”로 본</u>	<u>제안한 자</u> -----
	<u>다.</u>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 ② (생 락) <u><신 설></u>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u> <u>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u> <u>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u> <u>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u> <u>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u> <u>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u> <u>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 이</u> <u>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u> <u>구 지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u> <u>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u> <u>수 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u> <u>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열</u> <u>람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u> <u>의 협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u> <u>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u> <u>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u> <u>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u> <u>를 준용하고, 이 경우 “사업시</u> <u>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을</u> <u>제안한 자”로 본다.</u>